

**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**(제23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격 인 정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·중등학교<br>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<br>가.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나.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다.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2.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     |
| 특 수 학 교<br>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<br>가.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나.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다.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<br>2.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|
| 유 치 원<br>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<br>가.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<br>나.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<br>다.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<br>2.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      |
| 비 고<br>1. <삭제><br>2.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3. 이 표중 초·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.
4.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.